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

판 결

사 건 2018고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
등에의한추행)
피 고 인 회사원
주거
등록기준지
검 사
변 호 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최철호
판 결 선 고 2019. 4. 18.

주 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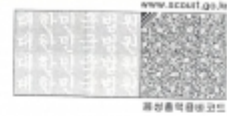
피고인을 벌금 5,000,000원에 처한다.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
노역장에 유치한다.
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.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



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양형의 이유

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,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돈을 공탁한 점, 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.

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

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,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.

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, 취업제한명령의 면제

피고인의 나이, 직업, 재범위험성, 범행의 종류, 동기, 범행과정, 결과 및 죄의 경중,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,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,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, 제49조 제1항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, 제50조 제1항 단서,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·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,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.

판사





등본입니다.

2019. 4. 19.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

법원주사보



※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,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,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